

南北朝時代の 冊封에 대한 檢討

——賜與된 官爵을 中心으로——

金 鍾 完

I. 序言

II. 冊封時 賜與된 官爵에 대한 檢討

III. 中外關係의 실제

IV. 結言——冊封의 意義

I. 序 言

冊封은 中國의 皇帝가 주변국가의 君長에게 특정한 관작과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賜與함으로써 그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公認하여 臣屬시키는 양식이다. 그러므로 冊封은 中國中心의 世界秩序를 규정하는 제도적 양식의 하나이며 中外關係의 한 類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中國中心의 世界秩序의 본질은 물론, 中外關係의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冊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이 모아져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70 년대를 전후하여 日本 史學界를 중심으로 이른바 ‘東아시아世界’의 구조를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冊封體制論이 등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¹⁾ 그러나 이들은

1) 冊封體制論에 관한 諸說을 소개·비판한 논문으로는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唐代史研究會編, 汲古書院, 1979, 東京)에 수록된 菊池英男, 「總說——研究史的回顧と展望」, 谷川道雄, 「東アジア世界形成期の史的構造——冊封體制を中心として」, 堀敏一, 「隋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 栗原益男, 「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등이 유용하다.

대개가 冊封體制의 구조적 기능과 성격, 冊封이 東아시아史의 전체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의 冊封에 대한 총체적 이론에 관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南北朝時代의 책봉이 갖는 의의를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中國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질서가 中國의 황제와 주변제국의 君長 사이에 맺어진 冊封關係에 의해서 규제·유지된다고는 해도, 南北朝時代와 같이 中國이 내부적으로 분열·상쟁함에 따라 주변제국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책봉의 정신과 실체는 과연 일치될 수 있을까. 그러하지 않다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 또한 일정한 형식에 內在된 정신은 시대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항상 可變的인데 그렇다면 책봉과 관련하여 南北朝時代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은 없을까. 대체로 이러한 점들이 본고에서 검토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책봉의 내용, 즉 책봉시에 수여된 각종 관작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책봉을 통하여 주변제국의 外夷君長에게 賜與된 각종 다양한 관작은 그 하나 하나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 冊封時 賜與된 官爵에 대한 검토

南北朝時代의 冊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 중의 하나는 外夷君長에게 수여한 官爵이 內臣²⁾의 그것과 同一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北魏가 北涼의 沮渠牧犍에게 수여한 ‘使持節·侍中·都督涼沙河三州西域羌戎諸軍事·車騎將軍·開府儀同三司·鎮護西戎校尉·涼州刺史·河西王’³⁾이나, 宋이

국내에서도 이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金漢植, 「日本에 있어서 東아시아世界研究의 現狀과 課題」(『大丘史學』 17, 1979))

2) 본고에서 사용한 ‘內臣’과 ‘外臣’은 栗原朋信 등에 의해서 정의된 역사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中國 국내의 신하와 外夷君長을 뜻하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3) 『魏書』 24, 「廬水胡沮渠蒙遜傳」

高句麗王 高璉에게 수여한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高麗王·樂浪公’⁴⁾과 같이 ‘河西’와 ‘高麗’란 王號를 제외하면 위와 같은 官爵을 받은 인물이 內臣인지 外臣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

冊封體制가 대외적으로 擴延된 前漢代에는 주변제국의 君長이나 有力者에게 王·侯·君·長의 칭호를 수여하는 정도로 단순하였으며⁵⁾ 內臣의 관직을 준 예는 없다. 그러나 後漢代에 이르면 王·侯·君·長 등과 함께 ‘都尉’·‘都護’를 수여함에 따라 처음으로 外臣에게도 內臣의 관직을 주는 경향이 나타났다.⁶⁾

이러한 경향은 三國時代에도 별다를 바 없으나 그후 晉代, 특히 東晉·五胡十六國時代에 이르면 持節·都督諸軍事·將軍·刺史(州牧)·校尉 등 다양한 內臣의 관직이 주어지고 있다.⁷⁾ 그러나 이 시기는 中國의 내부적 혼란으로 인하여 中外間의 교섭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冊封의 빈도도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던 것이 南北朝時代에 이르면 매우 빈번해졌을 뿐만 아니라,

(乾明元年二月) 戊申 以常山王演爲大丞相·都督中外諸軍事·錄尚書事 以大司馬長廣王湛爲太傅·京畿大都督 以司徒段韶爲大將軍 以前司空·平陽王淹爲太尉 以司空·平秦王歸彥爲司徒 彭城王浹爲尚書令 又以高麗王世子湯爲使持節·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麗王(『北齊書』5, 「廢帝紀」)

이라 하여 外臣에 대한 冊封이 內臣의 授職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南北朝時代에 外臣에게도 內臣과 동일한 관작을 수여한 것은 다른 시대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外夷君長에게 內臣과 동일한 관작을 준 까닭은 무엇이며 그러한 사실은 과연 어떤 의미를

4) 『南齊書』 58, 「東南夷傳」 高麗國條.

5) 谷川道雄, 上揭論文.

6) 『後漢書』 86, 「南蠻西南夷傳」·同書 87, 「西域傳」·同書 90, 「烏桓鮮卑傳」 등.

7) 『晉書』 8, 「穆帝紀」 永和 3 年 10 月條·同書 9, 「簡文帝紀」 咸安 2 年 6 月條 및 「孝武帝紀」 太元 11 年 4 月條·同書 97, 「四夷傳」 西域吐谷渾條 등.

갖는 것일까. 이는 일단 외형상으로만 보면 外臣을 內臣과 同等視하려는 것이라고 想定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冊封時에 수여된 각각의 관작에 대한 검토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持節·都督諸軍事·將軍·公과 함께 四夷校尉 및 四夷中郎將과 刺史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국가별로 정리하면〈表 1〉과 같다. 이제 이들 각각의 관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冊封時에 수여된 관작은 대개 持節·都督諸軍事가 맨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持節·都督은 皇帝의 信表인 符節을 받아 독자적으로 統軍한다는 의미로, 그의 기원에 대하여 『宋書』 「百官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持節·都督無定員 前漢遣使 始有持節 光武建武初 征伐四方 始權時置督軍御史 事竟罷 建安中 魏武帝爲相 始遣大將軍督軍 二十一年(216) 征孫權還 夏侯惇督二十六軍是也 魏文帝皇初二年(221) 始置都督諸軍事 或領刺史(『宋書』 39, 「百官志」上)

한편, 『南齊書』 「百官志」에는

魏晉世州牧隆重 刺史任重者爲使持節都督 輕者爲持節督 起漢從(順)帝時 御史中丞馮敕討九江賊 督揚·徐二州諸軍事 而河·徐宋志云起魏武遣諸州將督軍 王珪之職儀云起光武 並非也 晉太康中(280~289) 都督知軍事 刺史治民 各用人 惠帝末 乃並任 非要州則單爲刺史(『南齊書』 16, 「百官志」)

라 하였다.

위의 兩書의 持節·都督에 관한 내용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持節·都督의 기원은 漢代부터이나 일반화된 것은 대체로 魏晉代이다. 둘째, 都督은 일차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갖는 것이나 治民, 즉 民政權을 갖는 刺史를 兼領하였다. 셋째, 이들은 황제로부터 使持節·持節 등을 加授받아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넷째, 이들은 수개의 州를 兼統하였다.

主要 冊封國の 授爵内容 概要

〈表 1〉

南北朝	國家		高句麗	百濟	武都	吐谷渾	宕昌
	官	爵	持節・都督	使持節・都督	都督	使持節・都督	—
北朝	將軍 (最高位)	號	使持節・都督遼海諸軍事	使持節・都督	都督	使持節・都督西垂諸軍事	—
	將軍 (最高位)	號	征東將軍 (驃騎大將軍)	驃騎大將軍	征南大將軍 (車騎大將軍)	鎮西大將軍 (大將軍)	征南大將軍
	爵位	位	遼東郡開國公	帶方郡公	漢中郡公	西海郡開國公	河南公
北朝	其他	他	領護東夷中郎將 領護東夷校尉侍中 開府儀同三司	侍中 開府儀同三司 東青州刺史	儀同三司 領護西羌校尉 梁州刺史 秦梁二州牧 營州刺史	沙州刺史 領護西戎中郎將	領護西戎校尉 梁益二州牧 靈州刺史
	持節・都督	持節・都督	使持節・都督營平二州諸軍事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	使持節・都督北秦雍二州諸軍事	使持節・都督西秦河沙三州諸軍事	使持節・都督河涼二州諸軍事
南朝	將軍 (最高位)	號	征東大將軍 寧東將軍 (驃騎大將軍)	鎮東大將軍 (征東大將軍)	征西將軍 輔國將軍 (車騎大將軍)	征西・鎮西・輔國將軍 (驃騎大將軍)	安西將軍
	爵位	位	樂浪公	—	仇池公	澆河公・驩西公	驩西公
南朝	其他	他	散騎常侍 開府儀同三司	—	侍中 開府儀同三司 北秦州刺史 散騎常侍 平羌校尉	沙州刺史 西秦領護羌校尉 平羌校尉 散騎常侍 開府儀同三司	河涼二州刺史 東羌校尉

南北朝	國家官爵	北	涼	倭	林	邑	郎	至	高	昌
北	持節・都督	使持節・都督涼河西域羌戎諸軍事						—	持節	
	將軍號(最高位)	征西大將軍(車騎將軍)						龍驤將軍	平西將軍(衛將軍)	
	爵位	—						—	秦臨縣開國伯秦臨郡開國公	
	其他	領護西戎校尉涼州刺史侍中開府儀同三司						—	瓜州刺史	
南	持節・都督	使持節・都督涼河西域三州諸軍事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諸軍事	持節・都督緣海諸軍事		使持節・督西涼州諸軍事			
	將軍號(最高位)	征西大將軍(驃騎大將軍)		安東將軍(征東大將軍)	安南・綏南將軍		平西・平北將軍(安北將軍)			
	爵位	張掖公		—	—		—			
	其他	領護匈奴中郎將涼州刺史領西域戊己校尉西夷校尉		—	—		西涼州刺史			

또한 위와 같은 都督의 ‘統軍加節之制’에 대하여 『宋書』 「百官志」에는

晉世則都督諸軍爲上 監諸軍次之 督諸軍爲下 使持節爲上 持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持節殺無官位者 若軍事得與使持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 (『宋書』 39, 「百官志」上)

라 하여 그 位階와 각각의 권한을 밝히고 있다.⁸⁾

그런데 위와 같은 持節·都督에 관한 내용은 郡縣制의 변질과 豪族勢力의 신장을 전제로 할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漢代의 郡縣二級制는 南北朝時代에 州郡縣三級制로 移行되었다. 본래 州는 정규 지방행정단위가 아니었다. 漢代에는 郡縣을 감찰하기 위하여 ‘部’(監察區)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王莽의 집권 이후에 州로 改稱되었으며, 後漢末에 이르러서는 郡에 上位하는 지방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轉化되었다.⁹⁾

이러한 郡縣制의 변화는 後漢末의 지방 각지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中央政府의 노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방 반란의 진압은 郡의 힘만으로는 어려웠으므로 당시 郡보다 규모가 큰 州의 刺史에게 統帥權을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州의 刺史에는 重臣이 임명되는 한편 그 일대의 豪族이 다수 임명되기도 하였다.¹⁰⁾

당시 지방 각지에 산재하였던 호족집단은 상당수의 私兵과 宗族賓客을 거느리고 대규모의 莊園을 소유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일정한 지역의 人民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地方政權의 實勢였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기득권을 공인하여 이들에게 民政權과 軍事權을 부여하여 刺史와 都督諸軍事를 兼帶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制度圈 안으로 끌어 들이는 한편, 동시에 그들에

8) 加節之制에 대해서는 嚴耕望,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 卷中「魏晉南北朝地方行政制度」上冊, 第2章의 ‘都督與勅史’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였다.

9) 勞幹, 「兩漢勅史制度考」(『歷史語言研究所集刊』 11, 國立中央研究院, 臺北)

10) 谷川道雄, 上掲論文, p. 100.

의해 지배된 人民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持節·都督이 漢代 이래 魏晉代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일반화된 사실과 都督이 군사권을 물론, 민정권을 갖는 刺史를 兼領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또한 都督이 使持節·持節 등의 自律性을 보장받은 것도 호족 본래의 성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持節·都督이 출현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현상은 南北朝時代의 中外關係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中國 국내에서 人民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이완되었듯이 中國은 주변제국(민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규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이나, 이는 中國이 남북으로 분열상쟁함에 따라 주변제국에 대한 물리적 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中國은 종래의 전통적인 中華主義, 혹은 華夷思想을 바탕으로 한 宗主權을 포기하고 주변제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 국내에서 지방 호족세력을 통하여 人民을 간접적으로나마 지배하려던 것과 同様으로, 주변제국의 君長에게도 冊封을 통하여 統軍加節之制를 적용시킴으로써 持節·都督을 부여하여 그에 의해 지배되는 外夷集團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를 관철시키려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이념적인 것이었다. 中國 국내의 경우는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데 비하여 冊封의 경우는 다분히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表 1>에 보이는 都督遼海諸軍事(高句麗)·都督西垂諸軍事(吐谷渾)·都督緣海諸軍事(林邑) 등과 같이 都督區의 범위가 막연하다. 또한 그것이 中國 국내에서와 같이 州를 단위로 하였을 경우에도 임의로 설정한 虛州이거나, 현실적으로 被冊封國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가 다수 발견된다. 南朝諸王朝가 高句麗王에게 수여한 營平二州諸軍事가 그러하며, 北齊가 百濟王에게 授職한 東靑州刺史가 또한 그러

하다. 營州와 平州는 南北朝時代 내내 北朝의 영역으로 高句麗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었으며, 東靑州는 행정구역으로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虛州였다.

이처럼 中國이 被冊封國에게 현실적으로 그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군사권과 민정권을 인정한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하나는 南朝는 北朝의, 北朝는 南朝의 영역 중에서 과거 匹敵봉국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緣故權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南朝와 北朝의 諸王朝가 自國의 지배 영역을 확대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冊封時에 주변제국의 君長에게 수여된 관작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將軍號였다. 모든 冊封의 경우 예외 없이 將軍號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南北朝時代의 將軍號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더하려고 한다.

南北朝時代의 官制上 주목되는 사실 중의 하나는 將軍職의 발달이다. 漢代의 將軍職은 종류도 많지 않았거니와 常置된 것도 아니었다.¹¹⁾ 그후 魏晉代를 거치면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새로운 將軍職이 신설되어 그 수가 급증하였고 관제로 정비되어 체계화되었다.

『魏書』「官氏志」와 『梁書』「百官志」에는 北魏와 宋의, 각각 100餘號와 70餘號의 각종 將軍職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그후로 더욱 증가하는 한편 梁 天監 7年(508)에는 각종 將軍職을 國內用(125號)과 國外用(109號)으로 나누어 24班의 品階에 따라 정비하였다.¹²⁾ 그후 大通 3年(529)에 이르러 개정하였을 때에도 240號의 將軍職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¹³⁾ 陳代

11) 『後漢書』 24, 「百官志」將軍不常置條.

12) 『隋書』 26, 「百官志」上.

13) 同上.

에도 비슷한 숫자인 237 號에 달하였다.¹⁴⁾

이처럼 南北朝時代에 이르러 숫적으로 급증한 將軍職은 성격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은 관제상으로 정비되어 각각의 장군직이 일정한 品階를 갖게 됨에 따라, 종래의 군사적 기능보다는 오히려 관료의 기능의 대소와 지위의 고하를 표시하는 일종의 官品의 기능으로 轉變되었다.¹⁵⁾

이점은 冊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梁이 국외용 장군호를 일정한 品階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南北朝時代의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국가, 예컨대 高句麗·吐谷渾 등에게 주어진 장군호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고위직이었던 점, 그리고 각국이 장군호의 고하를 다룬 사실과 피책봉자의 지위를 높혀주는 進號의 경우 기존의 장군호보다 上位의 장군호를 수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冊封의 경우에도 將軍職이 官品으로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梁代에는 장군호를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직후의 관계개혁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일시적이었던 듯하다. 따라서 內臣과 外臣 모두 동일한 체계에 의해 장군직이 수여되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外夷君長에게 수여된 장군호의 기능에 대하여, 수여된 장군호의 관품이 곧 被冊封國의 국제적 지위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¹⁶⁾

14) 同上.

15)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金輪奎教授는 이들 각종 장군호가 당시 독자적인 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豪族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이는 또한 將軍 고유의 권한인 자율적 기능과도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金輪奎, 「南北朝時代의 中國의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歷史學會編, 一潮閣, 1985〉 p. 131)

16)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1978, 東京) pp. 268~270.

다음으로는 公·侯 등의 爵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魏晉南北朝時代의 爵制는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五等爵制(王公·侯·伯·子·男)를 골격으로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五等爵制는 周代의 封建制에서 기원하였다. 周天子는 大小諸侯에게 授爵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부여하여 공인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직접지배가 불가능한 全中國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周代의 五等爵制의 출현배경과 정신은 魏晉南北朝의 五等爵制에서도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魏晉南北朝時代의 地方豪族의 성장과 이들에 의한 地方分權의 통치 경향은 周代의 諸侯와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五等爵制의 기본 정신은 分立된 정치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曹魏가 五等爵制를 부활시켜 宗室을 封建하고 그후 이를 異姓의 臣下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도 당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호족세력을 국가체제 속으로 편입시켜 포섭함으로써 안정을 꾀하려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던 것이다.¹⁷⁾

다만 魏晉南北朝時代의 爵制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이미 谷川道雄이 지적한 바와 같이¹⁸⁾ 그 형식에 있어서 郡縣制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魏晉南北朝時代의 爵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晉의 爵制가 특히 그러하다. 『通典』에는 이에 대하여

晉亦有王·公·侯·伯·子·男·又有開國郡公·縣公·郡侯·縣侯·(縣)伯·(縣)子·縣男及鄉亭·關內等侯凡十五等(『通典』 19, 「職官」 11, 封爵條)

이라 하였다. 상기 기사에의 王·公·侯·伯·子·男은 곧 國王·國公·國侯·國伯·國子·國男으로 宗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開國郡公 이하는 異姓臣下에게 수여된 爵位이다. 이처럼 모든 爵位의 명칭은 國·郡·縣·

17) 谷川道雄, 上揭論文, p. 101.

18) 同上.

鄉亭 등의 郡縣制의 大小 行政區域의 단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앞서 持節·都督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당시의 독자적인 지방세력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위와 같은 中國 국내에서의 爵制는 주변제국의 君王에 대한 冊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한 의도는 中國이 국내에서 分立된 정치권력을 국가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려 하였듯이 현실적으로 中國의 규제를 벗어난 外夷集團을 中國중심의 국제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表 1>에서와 같이 外夷君長에게 수여한 爵位는 외형상으로도 中國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被冊封國과 연고가 있는 中國의 郡縣의 명칭을 붙인 郡公 혹은 縣伯이었다.¹⁹⁾ 이로써 보면 爵位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이념과 형식면에서 內臣과 外臣의 구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Ⅲ. 中外關係의 실제

이상에서 우리는 中國이 冊封을 통하여 外夷君長에게도 內臣과 동일한 관작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內·外臣의 구별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外臣을 內臣과 同等視한 것이라고 想定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종래의 엄격했던 ‘華夷之辨’의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中國과 주변제국은 모두 별개의 政治權力이며 이들의 관계는 力關係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冊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즉, 책봉의 주체인 中國과 被冊封國인 주변제국간의 力關係에 따라 책봉은 그 성격을 달리하였을 것이다. 冊封體制에 관한 諸說 중에서 이른바 力學關係論이 이러한 觀點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²⁰⁾ 따라서 南北朝時代의 冊封體制를 검토

19) 高昌의 경우와 같이 縣伯으로부터 郡公으로 進爵된 예도 있다. (『魏書』 11, 「出帝紀」 永熙 3年 10月條)

20) 布目潮風, 「隋唐帝國의 成立」(岩波講座『世界歷史』 5, 岩波書店, 1970, 東京) p. 271.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당시의 中外間의 力關係의 대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中外間의 力關係는 대체로 中外間의 정치·군사적 관계로 表出된다. 이와 관련된 양상으로는 朝貢·年號와 曆의 採用·貢問·入貢·通婚·내정 간섭과 軍事的 同盟·請兵 및 직접적인 전쟁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이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²¹⁾

朝貢은 中國의 外夷를 臣服시켜 中國中心의 世界秩序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冊封의 장산과 꼭 일치된다. 그런데 이러한 朝貢은 漢代 이래로 제도와 실제의 이완현상이 심화되어 南北朝時代に 이르러서는 본래의 '賀正月'의 의미조차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기간도 일정하지 않아 정규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中國이 주변제국에 대하여 朝貢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朝貢은 주변제국의 恣意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본래 朝貢이 갖는 정치적 규제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한다.

宗屬關係의 상징적인 표현인 年號와 曆의 채용 역시 본래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 사례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국가가 독자적으로 建元하였으며, 曆의 채용도 宗屬關係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변국가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란 인상이 짙다.

貢問은 주변제국이 中國의 특정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中國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通好, 中國에 대한 일시적인 사소한 적대행위, 中國이 원치않는 諸國間의 분쟁 등에 대하여 中國이 當該國家에 제재를 가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사례는 허다하게 발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국가가

坂元義雄, 「古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和親·冊封·使節——いみたる(『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東京) pp. 11~12.

21) 이들 각각의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南北朝時代の 朝貢關係 概觀」(『麗學』 61, 1986) 참조. 본고의 일부도 이 논문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遣使奉表하여 해명하거나 謝罪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責問은 실질적인 제재나 응징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어서 단순한 경고의 의미 외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責問이 군사적 행동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으며 責問 그 자체로 그칠뿐 그 이상의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위의 責問 보다도 정치적 宗屬關係가 더욱 구체화된 양상으로는 入質을 들 수 있다. 이는 人質이나 宿衛 등을 派送하는 것으로 南北朝時代에는 주변제국의 君王이 '遣子入侍'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여 일반화된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적극적인 內政干涉의 예는 全無하다.

국가간의 힘의 우열은 군사적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는 국가간의 군사적 동맹과 請兵 및 직접적인 전쟁관계 등이 포함된다. 南北朝時代에는 中國이 南北, 혹은 三國으로 분열됨에 따라 이들간의 대립과 주변제국간의 相爭 등이 서로 얽혀 中外간의 군사적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宋이 한때 林邑을 征伐하였고(446) 北魏가 鄯善·焉耆·龜茲 등 西域諸國에 遠征하였으며(445) 해마다 北邊을 침입하였던 柔然에 대하여 수차례 걸친 대대적인 정벌을 단행한 예도 없지 않으나,²²⁾ 전반적으로 볼 때 中國은 주변국가에 대하여 군사적 위세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는 南北朝간의 대립이 中國史上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극심하였으므로 주변국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餘力이 없었던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²³⁾

특히 北方에서 차례로 興起한 柔然과 突厥은 이들과 인접한 北朝의 諸王朝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이들 양자는 南北朝의 군사·외교의 주요 대상이었다. 北魏는 柔然에 대하여 수차례 걸친 대규모 정벌을

22) 北魏의 柔然征伐에 대해서는 朴漢濟, 『中國中世 胡漢體制研究』(一潮閣, 1988) 참조.

23)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稽胡〕自稱天子 立年號 置百官 屬魏氏亂 力不能討' (『北史』 96, 『稽胡傳』)이라 한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단행하였으나 이를 威服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한때 西域의 悅般과 연합하여 정벌한 예도 있다.²⁴⁾

이러한 주변제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는 北朝에 비하여 군사력에서 열세였던 南朝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宋은 宋—柔然—夏—北涼—北燕—高句麗로 이어지는 北魏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²⁵⁾ 한편 柔然과의 군사적 동맹도 성사시키고 있다. 宋이 柔然에 먼저 遣使하여 공동으로 北魏를 정벌할 것을 確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柔然이 南齊初에 北魏의 北邊을 침공하였다.²⁶⁾ 그러나 이때는 건국한 직후라서 南齊가 出兵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후 柔然이 南齊에 遣使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²⁷⁾

北魏는 柔然의 침입에 대하여 반격·정벌하는 등 어느 정도는 군사적 위세를 확립할 수 있었으나 北魏가 東西로 양분된 이후가 되면 그러한 군사력 조차 상실하였다. 따라서 北周와 北齊는 柔然을 대신하여 漠北의 새로운 패자로 군림하였던 突厥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和親하러 하였다. 이에 北周가 突厥과의 通婚을 성사시켰고 아울러 군사적으로도 동맹하여 양국이 두 차례에 걸쳐 北齊를 共伐하였다.²⁸⁾ 그러한 직후 北周가 北齊를 멸하여 北中國을 재통일하였던 것도 실은 突厥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한편 주변제국이 中國에 군사적 협조를 요청한 예도 다수 발견된다. 百濟가 高句麗를 공격하기 위하여 北魏에 請兵하였으나 北魏는 高句麗에 특별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²⁹⁾ 또한 吐谷渾王

24) 『魏書』 102, 「西域傳」悅般國條.

25) 이에 관해서는 北魏 太武帝가 宋의 北邊을 침입하였다가 回軍한 직후인 450년 4월에 宋 文帝에게 보낸 國書에 잘 드러나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彼往日北通芮芮(柔然) 西結赫連(夏)·蒙遜(北涼)·吐谷渾 東連馮弘(北燕)·高麗 凡此數國 我皆滅之 以此而觀 彼豈能獨立 芮芮與提已死 其子菟害復襲其凶迹 以今年二月復死 我今北征 先除有足之寇(柔然) 彼若不從命 來秋當復往取 故不先致討(『宋書』 95, 「索虜傳」)

26) 『南齊書』 59, 「芮芮虜傳」

27) 同上.

28) 『周書』 50, 「異域傳」下, 突厥條.

29) 『魏書』 100, 「百濟傳」

伏連壽가 그동안 臣服하였던 宕昌이 自國의 사신을 억류한데 대하여 懲伐할 뜻을 보이자, 北魏는 ‘그대는 宕昌과 함께 우리의 藩國인데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크게 臣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여 만류하였다.³⁰⁾ 그 밖에도 勿吉이 百濟와 共謀하여 高句麗를 攻取하려고 北魏에 遣使하여 可否를 물은 적이 있다. 이때에도 北魏는 ‘三國은 모두 같은 藩國으로 의당 和順하여 서로 侵擾하지 말라’고 하여 이에 반대하였다.³¹⁾ 이처럼 中國은 自國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간의 相爭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請兵에 대해서도 자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宗主國으로서의 포용력과 중립적 태도를 보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中國의 태도는 실은 南北朝가 서로 대치한 상황이었으므로 제국간의 분쟁에 개입한다거나 派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中外間의 力關係와 관련된 양상 외에 보다 현실적인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는 通婚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外間의 通婚은 漢과 匈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和親關係의 특수한 유형으로 中國과 藩國의 宮庭間에 이루어진 것이다.

南北朝時代의 통혼의 사례는 모두 15건으로 그중에서 5건은 北魏가 華北을 통일하기 직전에 北燕·北涼 및 柔然과 맺은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北魏의 동서분열 이후 北朝諸王朝와 柔然 및 突厥과의 사이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이제 그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北魏의 華北統一이 임박하였던 시기에 北魏의 군사적 압력에 완강히 저항하던 北燕主 馮文通은 측근의 권유에 따라 北魏에 遣使하여 請罪하고 아울러 ‘乞以季女充掖庭’ 함에 北魏 太武帝가 이를 허락하였다.³²⁾ 이는 北魏의 공세를 일시나마 모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馮文通은

30) 『魏書』 101, 「吐谷渾傳」

31) 『魏書』 100, 「勿吉傳」

32) 『魏書』 97, 「海夷馮跋傳」

그러한 직후인 436년 결국 北魏의 공격을 받아 高句麗로 망명함에 따라 北燕은 멸망하였다.

한편 北魏의 또다른 攻滅 대상이었던 北涼 역시 沮渠蒙遜의 死後 繼位한 沮渠牧犍이 蒙遜의 遺志대로 그의 누이를 보내움에 따라 太武帝는 그녀를 左昭儀로 삼았으며, 그 직후 牧犍은 太武帝의 누이와 通婚을 성사시킴으로써 양국간의 通婚관계가 성립되었다.³³⁾ 그러나 이 역시 전략적인 것으로 北魏는 439년 北涼을 멸하여 마침내 北中國을 통일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北魏가 北燕 및 北涼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키던 틈을 타 北魏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던 柔然과 北魏 사이에도 敕連可汗 吳提와 太武帝가 서로 누이를 교환함으로써 通婚관계가 성립되었다.³⁴⁾ 그러나

〈表 2〉

南北朝時代 中外間の 通婚關係表

年 代	內	容
432	北魏 太武帝(充掖庭)	北燕 馮文通的 季女
433?	北魏 太武帝(左昭儀)	北涼 沮渠牧犍의 妹
433?	北魏 武威公主(太武帝의 妹)	北涼 沮渠牧犍
434	北魏 西海公主	柔然 敕連可汗 吳提
434	北魏 太武帝(左昭儀)	柔然 敕連可汗 吳提의 妹
538	西魏 化政公主(元璽의 女)	柔然 塔寒(頭兵可汗 阿那瓌의 兄弟)
538	西魏 文帝	柔然 頭兵可汗 阿那瓌의 長女(悼皇后)
540	東魏 蘭陵公主(常山王 騫의 妹)	柔然 菴羅辰(頭兵可汗 阿那瓌의 子)
542	東魏 長廣公 湛(神武王 高歡의 第9子 후의 北齊 武帝)	柔然 隣和公主(菴羅辰의 女)
545	東魏 神武王 高歡	柔然 頭兵可汗 阿那瓌의 女(蠕蠕公主)
545	東魏 孝靜帝	吐谷渾王 夸呂의 從妹(容華嬪)
545	東魏 廣樂公主(濟南王 匡의 孫女)	吐谷渾王 夸呂
551	西魏 長樂公主	突厥 伊利可汗 土門
565	北周 武帝	突厥 木汗可汗의 女(阿史那皇后)
579	北周 千金公主(趙王 招의 女)	突厥 佗鉢可汗

33) 『魏書』 99, 「盧水胡沮渠蒙遜傳」

34) 『魏書』 103, 「蠕蠕傳」

이 또한 정략적인 임시방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北魏는 北燕·北涼·柔然·宋 등 동서남북의 적대세력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北魏가 군사적으로 강국이라고는 하나 이들을 동시에 상대하기란 역시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北魏는 상대의 강약과 정세의 완급에 따라 이들을 각개격파하려 하였던 것인데 상기 北燕·北涼·柔然과의 통혼도 北魏의 이러한 정략에 의한 것임은 물론이다.

北魏가 北燕과 北涼을 멸하여 당면한 목표였던 華北統一을 달성하자 공격의 방향을 그동안 보류하였던 柔然에게로 전환하였다. 이에 北魏는 443년 이후 수차례 걸친 대규모 柔然征伐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柔然은 크게 약화되었다. 北魏가 450년 오랫동안 보류하였던 宋에 대한 南伐를 단행하여 宋의 수도 建康을 마주보는 楊子江의 對岸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도 柔然의 약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外間의 통혼은 力關係에 따른 外交의 策略의 일환이었다. 北魏가 華北을 통일하고 柔然을 크게 약화시켜 대외적으로 위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되어서는 더이상 통혼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北魏가 華北을 통일한 이후에는 통혼의 사례가 全無하다. 그러다가 北魏가 동서로 분열된 직후인 538년 西魏와 柔然과의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당시 柔然主 阿那瓌는 후계자 문제로 인한 내분에서 패하여 한때 北魏로 망명하여 후대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그후 귀국하여 頭兵可汗을 칭한 이후 점차 강성하여지자 中國에 대하여 ‘禮敬頗闕 不復稱臣’³⁵⁾ 하였을 뿐만 아니라 東·西魏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다. 그 결과 柔然의 向背가 東魏와 西魏의 相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은 柔然과 和親關係를 맺기위한 외교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西魏가 먼저 柔然과 화친하여 文帝는 황족인 元璽의 딸인 化政公主를 阿那瓌의 동생인 塔寒에게 출가시키고 자신은 阿那瓌의 長女를 황후로 맞이하였으니 이가 곧 文帝悼

35) 『北史』 98, 「蠕蠕傳」

皇后이다.³⁶⁾

이와 같은 통혼에 의해 西魏와 柔然의 화친관계가 성립되자 柔然과 東魏의 관계는 자연 악화되었다. 그 결과 柔然이 東魏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고 상대국의 사신을 서로 억류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東魏의 실권자인 高歡은 柔然으로 인한 邊害를 막기 위하여 柔然에 수차에 걸쳐 遣使하여 和議를 제의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한 일례로 上記 悼皇后가 病死하였음에도 文帝와 宇文泰가 살해하였다는 등의 이간책을 써서 마침내 柔然과 通好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阿那瓌가 그의 太子 菴羅辰을 위해 東魏에 청혼하였으며 이에 高歡은 常山王 鷲의 누이인 樂安公主를 蘭陵公主로 改封하여 降嫁를 허락하였다.³⁷⁾

그후에도 양국 화친관계는 계속되어 阿那瓌의 太子인 菴羅辰의 딸, 즉 麟和公主와 高歡의 第9子 長廣公 湛(후의 北齊 武成帝)과의 통혼이 성립되었다.³⁸⁾

그후 상황이 바뀌어 柔然이 西魏와 連兵하여 來侵할 기미를 보이자 高歡은 재차 그의 아들 高澄을 위해 柔然에 청혼하였다. 그러나 阿那瓌가 高歡 자신과의 통혼이던 허락하겠다고 함에 高歡은 결국 阿那瓌의 딸을 받아들이며 蠕蠕公主라 칭하였다.³⁹⁾

突厥이 柔然을 괴멸시키고 북방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이후에는 西魏와 그의 後身인 北周가 突厥과의 화친관계를 유지하였다. 종래 화친관계를 유지하였던 柔然 및 東魏와 각각 적대관계에 있던 突厥과 西魏가 서로 밀착하였던 것은 어찌던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西魏와 突厥과의 통혼관계는 柔然에 청혼하였다가 굴욕적으로 거절당한 突厥의 伊利可汗 土門

36) 同上 및 『北史』13, 「后妃」上 文帝悼皇后郁久闐氏.

37) 『北史』98, 「蠕蠕傳」

38) 同上.

39) 『資治通鑑』159, 「梁紀」15 大同 11年 6月條.

이 西魏에 청혼하여 長樂公主를娶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⁴⁰⁾

北周가 西魏에 교체된 이후에도 突厥과의 화친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突厥은 木汗可汗 俟斤의 시대로 國勢가 가장 강성하였고, 경쟁상대인 北齊의 突厥에 대한 접근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北周의 突厥과의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못하였다. 통혼관계도 그러하였다. 北齊가 다량의 厚幣를 가지고 적극 突厥에 청혼하자, 北周 武帝는 突厥에 수차 遣使하여 종래의 信義를 내세운 끝에 겨우 木汗可汗의 딸을 阿史那皇后로 맞이 할 수 있었다.⁴¹⁾

北周가 北齊를 멸하여 華北을 재통일한 직후 突厥의 佗鉢可汗이 北周에 화친을 청하였다. 이에 北周 宣帝는 突厥로 탈출하여 망명정권을 수립한 北齊의 范陽王 高紹儀를 인도한다는 조건하에 趙王 招의 딸인 千金公主의 降嫁를 허락하였다.⁴²⁾

이상에서 南北朝時代 主外間の 통혼의 사례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제 그러한 통혼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北魏가 北燕·北涼·柔然과 통혼하였던 430년대 초는 五胡諸國 중에서 北燕과 北涼만 잔존하였던 시기로 北魏는 이들 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北魏는 양국 중 北燕에 대한 공격을 먼저 단행하였다. 따라서 北燕이 北魏에 遣使하여 入質과 함께 통혼을 自請한 것도 北魏의 군사적 압력을 일시 모면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北魏가 거의 같은 시기에 北涼과도 통혼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먼저 北燕을 공멸하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었다고 생각한다. 柔然과의 통혼도 마찬가지였다. 北魏의 당면 과제는 北燕과 北涼을 멸하여 北中國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魏가 그렇지 않아도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던 배후의 柔然과 계속해서 적대하는 것은 賢策이 아니었으므로 통혼하여 화친관계를 유지하였던 것

40) 『周書』 50, 「異域傳」 下 突厥條.

41) 『同上』 및 『周書』 9, 「皇后傳」 武帝阿史那皇后條.

42) 『周書』 50, 「異域傳」 下 突厥條.

이다.

이처럼 위의 일련의 통혼은 北魏가 華北을 통일하기 위한 정략의 일환이었으며 따라서 그 주체는 역시 北魏였다. 바로 이 점에서 보면 北魏가 동서로 분열된 이후 北朝의 諸王朝에서 나타나는 통혼은 그 성격이 자못 다르다고 하겠다.

주지하듯이 北魏가 東·西魏로 양분된 이후에는 南朝와 함께 中國이 三分됨에 따라 이들간의 相爭이 더욱 격화되는 등 中國 내부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中國의 諸王朝가 주변제국에 대하여 宗主權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특히 당시 中國의 북방에는 柔然과 突厥이 차례로 흥기하였는데 이들은 匈奴 이래로 漢北의 패자로 군림하였던 雄國이었다. 이들과 中國과의 관계는 다음의 기사에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① 芮芮(柔然)는 일명 大檀, 혹은 檀檀이라고 하는데 역시 匈奴의 別種이다. 西路로 京師와 交通하는데 3만여리 떨어져 있다. 大號를 僭稱하며 部衆이 강성한데 매년 遣使하여 京師에 온다. 中國과는 充禮하며, 焉耆·鄯善·龜茲·姑墨 등의 東道諸國이 모두 그에 예속 되어 있다. (『宋書』 95, 「索虜傳」)

② 神龜元年(518) 2월 肅宗이 顯陽殿에 임하여 顧禮 등 20인을 殿下에서 引見하였다. 中書舍人 徐紇을 보내어 宣詔하고 蠕蠕(柔然)이 藩禮를 갖추지 않은 의도를 責問하였다. (『魏書』 103, 「蠕蠕傳」)

③ 阿那瓌(柔然 頭兵可汗)가 (北魏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여) 復位한 초기에는 조정에 대하여 禮를 다하였다. 그러나 明帝(515~528) 이후로는 中原이 혼란하여져서 국외를 경략할 수 없게 되자 阿那瓌는 북방을 통솔하여 점차 강성하여졌다. (이에) 점점, 교만해져서 禮敬을 자못 빠뜨리는 한편 遣使하여 朝貢하였지만 다시는 稱臣하지 아니하였다. 天平(534~537) 이후로는 더욱 더 교만하여졌다(『北史』 98, 「蠕蠕傳」)

④ 俟斤(突厥 木汗可汗) 이후로는 나라가 부강하여져서 中國을 농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조정(北周)이 이에 화친하여 매년 糴絮錦絳 등 비단 10萬段을 주었고 京師에 거주하는 突厥人 또한 우대를 받아 好衣好食하는 자가 수천명이었다. 北齊 역시 突厥의 침탈을 두려워하여 府庫를 기울여 그들에게 주고 있다. 他鉢可汗은 더욱 교만하여져서 그의 徒衆에게 '남쪽에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두

명의 애송이들이 있는데 산물이 없음을 왜 걱정하겠는가'라고 말할 지경이었다.
(『周書』 50, 「異域傳」下 突厥條)

상기 일련의 사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柔然이 中國과 充禮하였다거나 藩禮를 갖추지 않았고 稱臣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中國을 능멸하였다는 기사를 통하여 당시 柔然과 中國과의 관계는 결코 宗屬關係가 아닌 대등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北周와 北齊가 모두 突厥의 侵寇를 두려워한 나머지 화친하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歲幣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他鉢可汗이 말한 내용에 이르러서는 양국이 오히려 突厥에 복속된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 밖에 당시 北魏와 대립하고 있던 宋과 南齊가 柔然에 전사하여 군사동맹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柔然이 실제로 北魏의 변경을 침입하였던 것도 柔然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南北朝時代 후반의 국제관계의 중심은 中國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柔然과 突厥이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특히 北朝가 동서로 분열된 시기에는 양자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柔然과 突厥의 向背가 이들의 相爭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특히 北朝의 양세력은 柔然 및 突厥과 화친·동맹관계를 맺기위해 거의 필사적이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통혼관계 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武帝의 阿史那皇后는 突厥의 木汗可汗 俟斤의 딸이다. 突厥은 柔然을 멸한 후에 塞表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병사 수천만이어서 中國을 업신여겼다. 太祖(宇文泰)는 北齊와 상쟁함에 있어서 (突厥과) 화친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俟斤은 처음에 (자신의) 딸을 太祖의 배필로 삼으려 하였으나 얼마 후에는 이를 후회하였다. 高祖(武帝)가 즉위하여 전후 여타차례 (突厥에) 遣使하여 화친을 맺고자 함에 이에 (俟斤은) 우리에게 出嫁를 허락하였다. 保定 5년(565) 2월에 陳國公 純·許國公 宇文貴·神武公 竇毅·南安公 楊荐 등에게 명하여 皇后의 文物과 行殿을 마련하여 六宮 이하 120인과 함께 俟斤의 牙帳으로 가서 皇后를 맞이하여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俟斤은 (厚幣에 현혹되어) 北齊에게도 통혼을 허락함으로

써 장차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려 하였다. 純 등이 여러해 동안 突厥에 머물러 復命할 수 없었는데 信義로서 訓諭하였으나 俟斤은 듣지 아니하였다. 마침 큰 바람이 치고 큰 바람이 불어 그들의 穹廬를 부수어 날렸는데 열흘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다. 俟斤은 크게 두려워하여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하늘이 꾸짖는 것으로 여기고 이에 禮를 갖추어 황후를 보냈다. 純 등이 行殿을 세우고 羽儀를列하여 황후를 받들고 귀국하였다. 天和 3년(568) 3월에 황후가 도착하였는데 高祖가 친히 맞이하였다. (『周書』 9, 「皇后傳」 武帝阿史那皇后條)

위의 기사를 통하여 당시 北周와 北齊가 突厥과의 화친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경쟁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國은 자연 저 자세일 수 밖에 없었으며, 때로는 참기 어려운 굴욕도 감수하였다. 西魏와 柔然의 통혼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北魏가 동서로 분열된 직후 西魏 文帝는 柔然과 화친하기 위하여 頭兵可汗 阿那瓌에게 “청혼하여 그의 장녀를 황후로 맞이하였다. 이가 悼皇后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文帝에게는 이미 文皇后 乙弗氏가 있었던 점이다. 따라서 부득이 그녀를 폐위시켜 別宮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후 出家하여 승려가 되었다. 文帝는 이를 측은히 여겨 내심 적당한 기회에 복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柔然이 대거 남하하자 文帝는 이에 굴복하여 결국 文皇后에게 自盡을 명할 수 밖에 없었다.⁴³⁾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東魏의 高歡이 阿那瓌의 또 다른 딸, 즉 蠕蠕公主를 맞아들였을 때에도 明皇后 婁氏가 正室의 자리에서 물러난 예가 있다.⁴⁴⁾

中國은 外夷君長の 딸을 皇后로 삼는다는 자체만으로도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때문에 본래의 황후까지 폐위시키고 심지어는 賜死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이는 분명 견디기 어려운 치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화친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을 통하여 당시 中外間의 통혼관계의 실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中國과 통혼한 주변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혼의 동기와 성격이

43) 『北史』 13, 「后妃」上 文帝文皇后乙弗氏 및 文帝悼皇后郁久闍氏.

44) 『北史』 14, 「后妃」下 齊武明皇后婁氏 및 蠕蠕公主郁久闍氏.

어떠하든 그것은 中國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셈이다. 따라서 이는 中國으로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우위성을 공인받는 것이라 하겠다.⁴⁵⁾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당시 中國王朝과 통혼관계에 있었던 柔然·突厥·吐谷渾은 물론,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北魏로부터 請婚받았던 高句麗⁴⁶⁾ 등의 국제적 지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南朝가 이들 국가에 접근하여 通好關係를 유지함으로써 北朝를 견제하려 하였던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통혼은 中外間의 각종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립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政略적인 것이며 和親策의 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中外 양자의 力關係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로써 보면 南北朝時代의 中外間의 통혼은 中國이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中國이 주변국가에 屈從한 적도 있었다.⁴⁷⁾

이러한 현상은 결국 中國이 주변제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반면 柔然이 北魏에 청혼한데 대하여 孝文帝가 ‘款約不著’, 혹은 ‘懷謫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⁴⁸⁾ 당시 北魏가 柔然에 대하여 威勢를 확립

45) 坂元義種, 上掲論文, p. 3.

46) 『魏書』100, 「高句麗傳」

47) 坂元義種은 中外間의 和親(通婚)關係를 中國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中國王朝가 위세를 확립할 수 없었던 시기에는 주변의 강성한 諸藩國에 人身供與의인 和藩公主를 보냈는데 이는 中國이 오히려 諸藩에 臣屬된 관계이다.

② 中國이 국내를 통일하고 국력의 부강과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諸藩의 入寇를 무력과 함께 막기 위해 맺은 통혼은 대등한 主客關係이다.

③ 中國王朝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고 무력과 모략으로써 諸藩國 내부의 분열과 상쟁을 일으켜서 약체화를 꾀하는 시점에서의 통혼관계는 主從·上下關係이다(坂元義種, 上掲論文, pp. 11~12).

위와 같은 坂元の 견해는 통혼만이 유일한 和親關係인가 라는 反問의 소지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적절한 분류로 여겨진다. 坂元の 분류에 따르면 南北朝時代의 통혼은 대체로 두 後者에 속한다고 하겠다.

48) 『魏書』103, 「蠕蠕傳」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편 南朝의 경우 北朝와는 물론 주변 제국과의 通婚이 全無한 것은 漢人王朝로서 전통적인 華夷思想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결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中外間의 力關係를 中外關係에 나타나는 주요 양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 中外關係는 中國을 宗主國으로 주변제국을 從屬國으로 하는 宗屬關係를 전제로 하였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中國이 우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中國과 주변제국은 모두 별개의 독립된 정치권력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은 역시 각 국가가 지닌 힘의 우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力關係란 中外 양자의 국내사정과 주변 국제정세에 따라 항상가변적이어서 이에 의해 전개된 中外關係를 무조건 中國의 宗主權을 전제로 한 宗屬關係로 속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南北朝時代의 中外關係는 中國이 내부적으로 분열·상쟁하였고 주변에 柔然·吐谷渾·高句麗·突厥 등의 강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中國의 주변제국에 대한 규제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본래 朝貢이 갖는 규제력도 상실하였으며, 宗屬關係의 상징적인 표현인 曆과 年號의 채용도 주변제국이 독자적으로 建元하였으며 曆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貢問과 入貢도 형식에 지나지 않아서 본래의 구속력을 상실하고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볼 때 中國은 주변제국을 위압할 만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통혼의 경우는 北魏의 분열 이후 北朝의 동서 양정권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북방의 柔然 및 突厥과 화친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中國이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力關係에서 보면 中國을 중심으로 宗屬關係, 대등한 水平關係, 中國이 오히려 藩國에 굴종하는 逆宗屬關係 등의 세가지 유형을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南北朝時代의 中外關係는 대체로 宗屬關係를 전제로 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水平關係로 볼 수 있는 면이 많다고 하겠

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中國의 주변제국에 대한 제어력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 結言——冊封의 意義

이상에서 우리는 두가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中國이 冊封을 통하여 外夷君長에게도 內臣과 동일한 官爵을 수여하였으며, 그러한 관작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종래의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국가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中國이 내부적 분열로 인하여 주변제국에 대한 물리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 外夷에 대한 제어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두가지 사실을 전제로 南北朝時代의 冊封이 갖는 意義를 정리하려고 한다.

中國의 전통적 外夷支配方式의 하나는 이들을 朝貢, 혹은 冊封의 형식을 통하여 中國中心의 世界秩序內로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의 영역을 中國의 郡縣으로 편입시킴으로써 中國의 지배영역 확대시켜 직접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군사적 통치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당시 中國의 상황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때 北魏가 鄯善·焉耆·龜茲 등 서역제국을 정벌하고

(太平眞君九年(448)) 夏五月甲戌 以交趾公韓拔爲假節·征西將軍·領護西戎校尉鄯善王 鎮鄯善 賦役其民 比之郡縣(『魏書』4下, 『世祖紀』下)

이라 하여 鄯善에 西戎校尉府를 설치하고 서역 일부에 대하여 郡縣統治를 시도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시적인 것이었다. 오히려 漢代 이래 異民族을 직접 統轄할 목적으로 설치됐던 몇몇 특수한 機關, 예컨대 四夷校尉 및 四夷中郎將 등이⁴⁹⁾ 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冊

49) 이들의 출현과 성격에 대해서는 金翰奎, 『古代中國의 世界秩序研究』(一潮閣, 1982) pp. 282~382 참조.

冊封時 해당지역의 外夷君長에게 주어졌다.⁵⁰⁾ 결국 이러한 현상은 中國이 外夷에 대한 직접지배를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外夷에 대한 직접지배가 불가능하였다면, 上記 外夷支配方式의 前者, 즉 조공·책봉의 형식을 통한 간접적 지배방식만 남게 된다. 그러나 제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朝貢關係로 지칭되는 中外關係도 朝貢의 형식만 유지됐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中國은 外夷에 대한 규제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이는 분명히 개개의 독립적 外夷集團을 中國이라는 하나의 구심력으로 歸一시키려는 中國의 전통적 대외관인 中華主義의 이상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中國이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둬으로써 中國中心의 世界秩序를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의 乖離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구된 것이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中·外, 혹은 華·夷의 구별이 무시된 ‘中外一體’, 혹은 ‘華夷一體’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外夷에 대한 지배가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로써 종래의 內·外臣의 구별이 제거됨에 따라 外臣에게도 內臣과 동일한 관작을 수여하였던 것이다.

이는 또한 개개의 독립적 外夷集團이 中國의 일부, 즉 하나의 지방세력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 2절에서 冊封時 外夷君長에게 수여된 관작, 예컨대 持節·都督·將軍·公·侯 등이 본래는 中國 국내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탈하였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국가체제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中國內의 지방세력과 外夷集團은 독자적인 정치권력이란 점에서는 다를 바 없으며, 또한 中國이 이들을 制度圈內로 편입시키려는 대상이었던 점에서도 일치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지방세력에게 수여하였던 관작이 外夷君長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실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中國이 주변제국의 對中國使行을 대표하는 인물을 당시 국내의 지방권력의 핵심

50) 구체적인 내용은 上掲 拙稿 참조.

적인 기구인 幕府의 上級幕僚인 長史·司馬로 간주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中國이 外夷集團을 中國의 일개 지방세력으로 간주하였다는 증거는 南北朝時代에 朝貢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 ‘職貢’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左傳』의 用例로 보아 周代의 諸侯가 天子에게 貢獻하는 의례적이고 의무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南北朝時代의 ‘職貢’도 中國이 外夷君長을 周代 封建制에서의 諸侯처럼 하나의 지방세력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⁵²⁾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도 발견된다.

高祖(471~499) 재위시에 朱長生을 員外散騎常侍로 삼아 于提와 함께 高車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 王庭에 이르자 高車主 阿伏至羅가 朱長生 등에게 拜禮를 요구하였다. 朱長生이 이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나는 天子의 勅使인데 어찌 下土의 諸侯에게 拜禮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阿伏至羅는 이 때문에 (朱長生을) 禮待하지 않았다. (『魏書』 87, 「朱長生傳」)

그 밖에 宋으로부터 冊封되어 茹藍城을 屯守하던 武都王 楊文德이 北魏의 공격을 받아 漢中으로 도주하였다가 붙잡혀 宋의 수도로 압송된 예가 있다. 이때 宋은 그에게 失守를 물어 ‘免官削爵土’하였다.⁵³⁾ 이 경우, 爵土란 宋이 武都王에 대한 책봉을 통하여 지배권을 인정한 武都國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封建制에서 天子가 諸侯에게 分給한 封土의 의미로 본 것이다.

위와 같은 두가지 사례, 즉 高車王을 ‘下土의 諸侯’라 하였고, 武都王에 대하여 ‘免官削爵土’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中國은 外夷君長을 中國의 일개 諸侯, 즉 中國內의 하나의 지방세력으로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51) 金翰奎, 上揭論文.

坂元義種, 「倭の五王の外交——司馬曹達を中心に」(『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 鮮吉川弘文館, 1978, 東京) pp. 396~399.

52) 拙稿, 上揭論文.

53) 『宋書』 98, 「氏胡傳」

지금까지 冊封時에 外臣에게도 內臣과 동일한 관작만 賜與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주로 中國의 입장에서 규명하려 하였다. 그것은 中國의 外夷에 대한 제어력의 약화라는 현실과 中國中心의 世界秩序의 유지라는 이상의 乖離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中國은 이를 이념과 현실을 조화시킴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된 것이 華夷一體, 혹은 中外一體였다. 이로써 外夷君長으로 대표되는 독립된 外夷集團이 中國의 일개 지방세력으로 파악됨에 따라 內·外臣의 구별이 배제되어 外臣에게도 內臣과 동일한 관작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극히 이념적인 면이 강조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종래의 엄격하였던 華夷之辨이 완화된 것이며 그러한 전제로서 中國이 外夷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또한 中國이 華夷를 混和하는 天下一家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華夷觀의 변질 내지는 ‘世界’ 개념의 확대 구현이라 할 것이다.

南北朝時代 冊封表

1) 武都(清水氏)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398	楊盛	征南大將軍・仇池王
	427	楊玄	征南大將軍・都督・梁州刺史・南秦王
	433.9	楊難當	征南大將軍・儀同三司・領護西羌校尉・秦梁二州牧・南秦王
	孝文帝 (471~499)	楊文弘	都督・南秦州刺史・征西將軍・西戎校尉・武都王
	482.9	楊後起	(襲爵) 武都王
	孝文帝	楊集始	征西將軍・武都王
	492		都督・南秦州刺史・安南大將軍・領護南蠻校尉・漢中郡侯・武興王
	?		(進號) 鎮南將軍
	?		(加號) 督寧湘等五州諸軍事
	503	楊紹先	(追贈)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 都督・南秦州刺史・征虜將軍・漢中郡公・武興王

宋	420	楊盛	(進號) 車騎大將軍 (加號) 侍中(使持節·侍中·都督隴右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北秦州刺史·仇池公)
	422		(改封) 武都王
	425		(追贈) 驃騎大將軍(餘如故)
	425.11	楊玄	使持節·征西將軍·平羌校尉·北秦州刺史·武都王
	430.6	楊難當	冠軍將軍·秦州刺史·武都王
	432.6		(進號) 征西將軍 (加號) 持節·都督·平羌校尉
	443	楊文德	使持節·散騎常侍·都督北秦雍二州諸軍事·征西大將軍·平羌校尉·北秦州刺史·武都王
	448		(免官)
	450		輔國將軍
	?		(追贈) 征虜將軍·秦州刺史
	455.3	楊文智	征西將軍·北秦州刺史
	?	楊元和	武都王
	?	楊僧嗣	寧朔將軍·仇池太守
	466		冠軍將軍·北秦州刺史·武都王(太守如故)
	467		(加號) 持節·都督北秦雍二州諸軍事 (進號) 征西將軍(校尉·刺史如故)
	472	楊文度	龍驤將軍·略陽太守·武都王
	472		寧朔將軍
	476		(加號) 督北秦州諸軍事·平羌校尉·北秦州刺史(將軍如故)
	477		(進號) 使持節·都督北秦雍二州諸軍事·征西將軍(刺史·校尉如故)
	477		(追贈本官·加號) 散騎常侍
	478.6	楊文弘	督北秦州諸軍事·平羌校尉·北秦州刺史·武都王(將軍·輔國將軍)如故)
南齊	480.11	楊後起	持節·寧朔將軍·平羌校尉·北秦州刺史·武都王
	482		(進號) 冠軍將軍
	484		(進號) 征虜將軍
	486	楊集始	持節·輔國將軍·北秦州刺史·平羌校尉·武都王
	495	楊叡之	持節·督北秦雍二州諸軍事·輔國將軍·平羌校尉·北秦州刺史·仇池公
	497.11	楊靈珍	持節·督隴右諸軍事·征虜將軍·北秦州刺史·仇池公·武都王
	500	楊集始	使持節·督秦雍二州諸軍事·輔國將軍·平羌校尉·北秦州刺史

梁	502	楊集始	使持節・都督秦雍二州諸軍事・輔國將軍・平羌校尉・北秦州刺史・武都王
	502.6	楊紹先	北秦州刺史・武都王
	?	楊智慧	平西將軍・秦南秦二州刺史・武興王
	535.12		(進號) 車騎將軍

2) 河南(吐谷渾)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431.8	慕瑱	大將軍・西秦王
	437.9	慕利延	鎮西大將軍・開府儀同三司・西平王
	452.9	拾寅	鎮西大將軍・沙州刺史・西平王
	493.1	伏連勝	使持節・都督西垂諸軍事・征西將軍・領護西戎中郎將・西海郡開國公・吐谷渾王
宋	423.2	阿豺	督塞表諸軍事・安西將軍・沙州刺史・洮河公
	442		(追贈) 安西(將軍)・(西)秦(河)沙三州諸軍事・沙州刺史・領護羌校尉・隴西王
	430	慕瑱	督塞表諸軍事・征西將軍・沙州刺史・隴西公
	432.6		使持節・散騎常侍・都督西秦河沙三州諸軍事・征西大將軍・西秦河二州刺史・領護羌校尉
			(進爵) 隴西王
	438	慕延	鎮西將軍・秦河二州刺史
	438.2		使持節・散騎常侍・都督西秦河沙三州諸軍事・鎮西大將軍・領護羌校尉・西秦河二州刺史・隴西王
	439		(改封) 河南王
	452.9	拾寅	使持節・督西秦河沙三州諸軍事・安西將軍・領護羌校尉・西秦河二州刺史・河南王
	453.6		(進號) 鎮西大將軍・開府儀同三司
	467.10		(進號) 征西大將軍
	475.9		(進號) 車騎大將軍
南齊	475.9		(進號) 驃騎大將軍
	481	易度侯	使持節・都督西秦河沙三州諸軍事・鎮西將軍・領護羌校尉・西秦河二州刺史・河南王
	485		(進號) 車騎大將軍
	490	休留茂	使持節・督西秦河沙三州諸軍事・鎮西將軍・領護羌校尉・西秦河二州刺史
梁	502		(進號) 征西將軍
	504.9	伏連勝	(襲爵) 鎮西將軍・西秦河二州刺史・河南王

529.3	阿羅眞	寧西將軍・護羌校尉・西秦河沙三州刺史
530.4	佛輔	(襲爵) 寧西將軍・西秦河二州刺史
534.3	沓振	西秦河二州刺史・河南王

3) 高句麗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435.6	高璉	(進號) 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491		(追贈) 車騎大將軍・太傅・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492.3	高雲	使持節・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519		(追贈) 車騎大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520.2	高安	安東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531	高延	使持節・散騎常侍・車騎大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東魏	天平 (534~537)	高延	(加號) 侍中・驃騎大將軍(餘悉如故)
北齊	?	高成	散騎常侍・車騎將軍・領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麗王
	550.9		使持節・侍中・驃騎大將軍・領護東夷校尉(王・公如故)
	560.2	高湯	使持節・領東夷校尉・遼東郡公・高麗王
北周	577	高湯	上開府儀同(三司)・大將軍・遼東郡開國公・遼東王
隋	581.12	高湯	(進號) 大將軍・遼東郡公・(改封)高麗王
東晉	413	高璉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
宋	420.7		(進號) 征東大將軍(持節・都督・王・公如故)
	422		(加號) 散騎常侍・督平州諸軍事
	463.6		(進號)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持節・常侍・都督・王・公如故)
南齊	480.4		(進號) 驃騎大將軍
	494	高雲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麗王・樂浪公
	?		(進號) 車騎將軍
梁	502.4		(進號) 車騎大將軍

	508		撫東大將軍・開府同義三司(持節・常侍・都督・王如故)
	520.2	高安	持節・督營平二州諸軍事・寧東將軍・高麗王
	526	高延	(襲爵)
	?		(進號) 撫東將軍
	548	高成	寧東將軍・高麗王・樂浪公
陳	562閏2	高湯	寧東將軍・高句驪王

4) 宕昌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世祖 (423~ 452)	梁彌忽	宕昌王
	478.3	梁彌機	征南大將軍・西戎校尉・梁益二州牧・河南公・宕昌王
	?		(改封) 鎮護西戎校尉・靈州刺史(王如故)
	485.7	梁彌承	宕昌王
	505.1	梁彌博	宕昌王
西魏	535	梁彌博	撫軍將軍
	538		南洮州刺史・要安藩王
	?		岷州刺史
	?	梁彌定	宕昌王
宋	457	梁瑾葱	輔國將軍・河州刺史・宕昌王
	461	梁唐子	河州刺史・宕昌王
	476	梁彌機	使持節・督河涼二州諸軍事・安西將軍・東羌校尉 河涼二州刺史・隴西公・宕昌王
南齊	479	梁彌機	(進號) 鎮西將軍
	?		(免官)
	483		(復先官爵) 使持節・督河涼二州諸軍事・安西將軍・東羌校尉・河涼二州刺史・隴西公・宕昌王
	485.8	梁彌頡	使持節・督河涼二州諸軍事・安西將軍・東羌校尉・河涼二州刺史・隴西公・宕昌王
	488.5	梁彌承	使持節・督河涼二州諸軍事・安西將軍・東羌校尉 河涼二州刺史・隴西公・宕昌王
	?	梁彌頡	安西將軍・宕昌王
梁	502.4		(進號) 鎮西將軍

502. 閏4	梁彌邕	安西將軍・河涼二州刺史・宕昌王
505. 4	梁彌博	使持節・都督河涼二州諸軍事・安西將軍・東羌校尉・河涼二州刺史・隴西公・宕昌王
541. 2	梁彌泰	(襲爵) 平西將軍・河涼二州刺史・宕昌王

5) 百濟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齊	570. 2 571. 1	餘昌	使持節・侍中・驃騎大將軍・帶方郡公(王如故) 使持節・都督・東青州刺史
隋	581. 10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百濟王
東晉	416	餘映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宋	420. 7 430 457. 10	餘毗 餘慶	(進號) 鎮東大將軍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 鎮東大將軍
南齊	480. 3 490	牟都 牟大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
梁	502 521. 12 524	餘隆 餘明	(進號) 征東大將軍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百濟王 持節・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陳	562 閏2		撫東大將軍・百濟王

6) 倭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宋	421 438 443 451 451. 7 462. 3 478. 5	讚 珍 濟 興 武	賜除授 安東將軍・倭國王 安東將軍・倭國王 (加號)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進號) 安東大將軍 安東將軍・倭國王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倭王

南齊	479	武	(進號) 鎮東大將軍
梁	502.4		(進號) 征東大將軍

7) 河西(北涼)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431.9	沮渠蒙遜	假節・侍中・都督涼州西域羌戎諸軍事・行征西大將軍・太傅・涼州牧・涼王
	433.4	沮渠牧犍	使持節・侍中・都督涼州三州西域羌戎諸軍事・車騎將軍・開府儀同三司・領護西戎校尉・涼州刺史・河西王
	?		(改封) 征西大將軍(王如故)
宋	421	沮渠蒙遜	使持節・散騎常侍・都督涼州諸軍事・鎮軍大將軍・開府儀同三司・涼州刺史・張掖公
	423.2		侍中・都督涼秦河沙四州諸軍事・驃騎大將軍・領護匈奴中郎將・西夷校尉・涼州牧・河西王(開府・持節如故)
	426.5		車騎大將軍
	434.5	沮渠茂虔	持節・散騎常侍・都督涼秦河沙四州諸軍・事征西大將軍・領護匈奴中郎將・西夷校尉・涼州刺史・河西王
	442.6	沮渠無諱	持節・散騎常侍・都督涼河沙三州諸軍事・征西大將軍・領護匈奴中郎將・西夷校尉・涼州刺史・河西王
	444.9	沮渠安周	持節・散騎常侍・都督涼河沙三州諸軍事・征西將軍・領西域戊己校尉・涼州刺史・河西王
	459.10		征虜將軍・涼州刺史

8) 林邑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宋	421	范陽邁	林邑王
南齊	491.12	范當根純	持節・都督緣海諸軍事・安南將軍・林邑王
	492	范諸農	持節・都督緣海諸軍事・安南將軍・林邑王
	495		(進號) 鎮南將軍
	498	范文款	假節・都督緣海諸軍事・安南將軍・林邑王
梁	510	范天凱	持節・督緣海諸軍事・威南將軍・林邑王
	526	高式勝繼	持節・督緣海諸軍事・綏南將軍・林邑王
	530	高式律陀羅跋摩	持節・督緣海諸軍事・綏南將軍・林邑王

9) 高昌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延昌(512~515)	麴嘉	持節・平西將軍・瓜州刺史・泰臨縣開國伯(私署王如故)
	?		(追贈) 鎮西將軍・涼州刺史
	528.6	麴光	平西將軍・瓜州刺史・泰臨縣開國伯・高昌王
	531	麴堅	平西將軍・瓜州刺史・泰臨縣開國伯(王如故)
	?		(進號) 衛將軍
	533.10		(加號) (開府) 儀同三司
			(進爵) (泰臨) 郡(開國) 公
西魏	548	麴玄喜	高昌王

10) 鄧至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高祖(471~488)	像舒治	龍驤將軍・鄧至王
	509.8	像覽蹄	鄧至王
宋	?	像舒彭	征虜將軍・西涼州刺史・羌王
南齊	479		(進號) 持節・平西將軍
	?		(免官)
	483		(復先官爵) 使持節・平北將軍・西涼州刺史・羌王
梁	502.8		(進號) 安西將軍・鄧至王
	502		督西涼州諸軍事・安北將軍

11) 其他

王朝名	年 代	王 名	冊 封 內 容
北魏	522.4	覆羅伊匄(高車)	鎮西將軍・西海郡(開國) 公・高車王
東魏	孝靜帝(534~550)	去賓(高車)	安北將軍・肆州刺史・高車王
北齊	565.2	金真興(新羅)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宋	420.7	李歆(西涼)	(進號) 征西將軍
	420.7	乞伏熾盤(西秦)	(進號) 安西大將軍
	479	荷知(加羅)	輔國將軍・本國王
	504	僑陳如闍耶跋摩	安南將軍・扶南王